

# 「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0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10월 14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가족복지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다양하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·시행하여 우리 군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(안 제4조)
- 아동복지사업 경비 지원 (안 제5조)
-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및 보조 (안 제6조 ~ 제7조)
-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증진 기여자 포상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.

[붙임 1]

「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4. 10. 2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### 2. 제안이유

- 다양하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·시행하여 우리 군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(안 제4조)
- 아동복지사업 경비 지원 (안 제5조)
-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및 보조 (안 제6조 ~ 제7조)
-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증진 기여자 포상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에서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, 제4조에서 ‘지자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우리 군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아동복지 증진사업)에서 평창군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.

#### < 아동복지 증진 사업 >

1.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
2.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
3. 아동의 안전·건강에 대한 사업
4. 아동 보호서비스와 아동 학대 예방 사업
5.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5조(경비 지원)에서는 조문 내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**< 아동복지 경비 지원사업 >**

1.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행사 또는 사업
2.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
3.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
4.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
5. 아동의 문화·체육 활동 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6조(사업의 운영)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동복지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시행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[붙임 2]

#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10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·시행하고,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대한 책무 (안 제3조)

나.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 사업 명시 (안 제4조)

다. 아동복지사업 경비 지원 (안 제5조)

-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, 교통편의 증진, 안전체험 활동,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, 문화·체육활동 사업 등

라.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(안 제6조~제7조)

마.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증진 기여자 포상 근거 (안 제8조)

바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 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8. 13. ~ 2024. 9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4-1181호, 가족복지과-5895(2024. 8. 13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2229(2024. 8. 5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2229(2024. 8. 5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5710(2024. 8. 12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394(2024. 9. 13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##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복지”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시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아동복지 증진사업)**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
2.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
3. 아동의 안전·건강에 대한 사업

4.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
5.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
6.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경비 지원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또는 사업
2.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
3.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
4.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
5. 아동의 문화·체육 활동 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사업의 운영)** ① 군수는 제5조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및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지원중단 및 환수)**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·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

2.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
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
4. 경영상태·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
5.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
6.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

**제8조(포상)** ① 군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과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,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아동복지법

[시행 2024. 8. 7.]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)**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,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경비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
연락처	(033) 330 - 2124